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도입 안내

1 목적

- '24년부터 전자카드제가 중·소규모 공사(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업무 경감 및 원활한 제도 이행 도모

<참고>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가입사업장 주요 현황

- '24.7월 기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약 64천개소이며, 이 중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은 약 56%(36천개소)
 -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24.1월)로 인한 신규 적용사업장의 약 98%(26천개소)가 중·소규모 공사(50억원 미만)이며, 적용사업장은 연말까지 약 80천개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준: '24.7월 단위: 개소, %)

구 분	계	3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비중)	64,858 (100)	26,195 (40.4)	27,460 (42.3)	4,252 (6.6)	6,951 (10.7)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비중)	36,513 (56.3)	18,071 (27.8)	10,481 (16.1)	2,636 (4.06)	5,325 (8.21)

2 사업 내용

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공제회가 승인한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
- (시행시기) '24.8월
 - ※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24.8월~ (위임 신청서 접수 및 서비스 실시) '24.9월~
- (업무대행기관 신청 자격)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행정사 법인이거나 4대 보험 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일반행정사 포함
- (위임 가능 사업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당연가입적용사업장 및 임의가입사업장
- (대행 가능 업무 범위) 퇴직공제 성립신고, 단말기 설치, 근로내역 신고 등 사업주 관리업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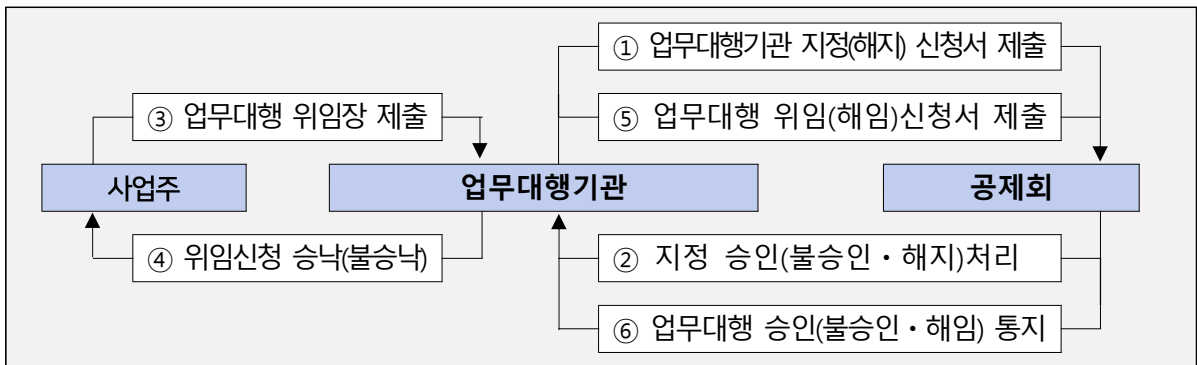
나. 세무 업무 추진절차

○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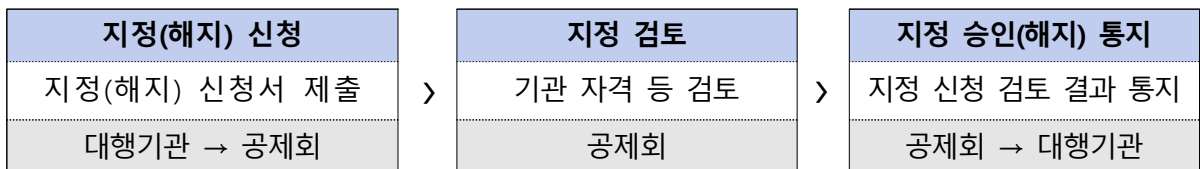
- ①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에 “업무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② 공제회는 “업무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검토 및 지정 결과 통지
 - ③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업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퇴직공제 업무대행 위임장” 제출
 - ④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위임장”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은 승낙 통지
 - ⑤ 업무대행기관은 공제회에 “퇴직공제 업무대행 위임신청서” 제출
 - ⑥ 업무대행 위임사실 확인 및 위임 신청결과 통지와 함께 서비스 개시
- (기타) 세부내용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처리기준’에서 정함

<참고> 업무 진행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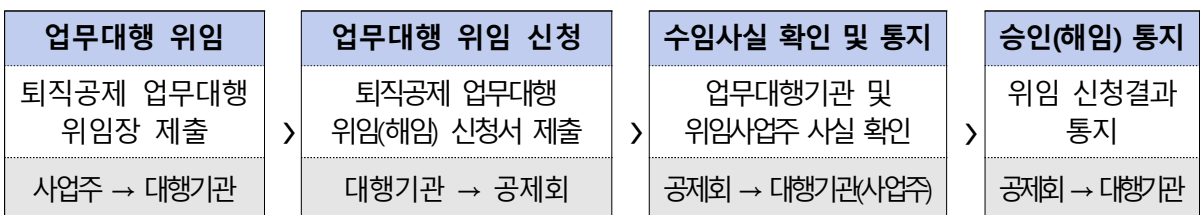
◇ 업무 전체 흐름도



◇ 업무대행기관 지정(해지) 절차(24.8월~)



◇ 업무대행 위임(해임) 절차(24.9월~)



다. 업무대행기관 교육 및 포상

○ 업무대행기관 교육

- (대상) 업무대행 지정 희망 기관(이수 필수)
- (내용)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개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 (방법 / 일정) 집합교육(필요 시 실습교육 병행) / 상·하반기 각 1회
- (교육신청) 포스터 내 QR 스캔 또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ecard.cw.or.kr)' 내 공지사항 참고

※ 하반기 교육은 '24.8.27.(화) 서울에서 실시 예정이며, 세부 장소 등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공지

- (평가기간) '24.8월 ~ '24. 11. 30.
- (평가방법) 공제회 자체 평가, 정량적 평가(100점 만점)
- (평가지표) 위임사업장 수, 위임사업장 유지율, 신고실적*, 교육 참여율
- * 신고율, 신고건수 합산
- (포상규모) 총 10개 기관 / 총 8백만원
- ※ 최우수 1개 기관(2백만원), 우수 3개 기관(1백만원), 장려 6개 기관(0.5백만원)이며, 포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24.8월~) ※ 단 사업주 위임 신청서 접수 및 대행 서비스는 '24.9월 이후 실시
신청방법	이메일(ecard@cw.or.kr) 또는 팩스(0505-182-8343)를 통한 서류 제출 ※ 이메일 및 팩스접수는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향후 전산시스템 활용 예정
제출서류	①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비스 처리기준 참고) ② 업무대행기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4대보험 사무(업무)대행기관: 4대보험 사무(업무) 대행기관 지정서 등 • 4대보험 사무(업무)대행기관 이 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 법인설립 허가증·인가증, 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개인) 각종 자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직무개시등록증, 세무사등록증,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회계사등록증 등
유의사항	• 공제회는 지정(해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대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지정 신청 검토 결과'를 통지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 요청 및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 (☎ 02-519-2132~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도입('98.1.1.)
- (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참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퇴직공제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②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③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 ④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공사	·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	·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일에 따라 상이함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연도별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및 공제부금 수납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사업장 수	26,764	30,777	45,386	78,597	77,119	86,492
수납액	5,940	6,096	6,226	6,784	8,539	9,564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전자카드제 개요

- (도입·적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20.11.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단계】

구분	1단계 ('20.11.27~)	2단계 ('22.7.1~)	3단계 ('24.1.1~)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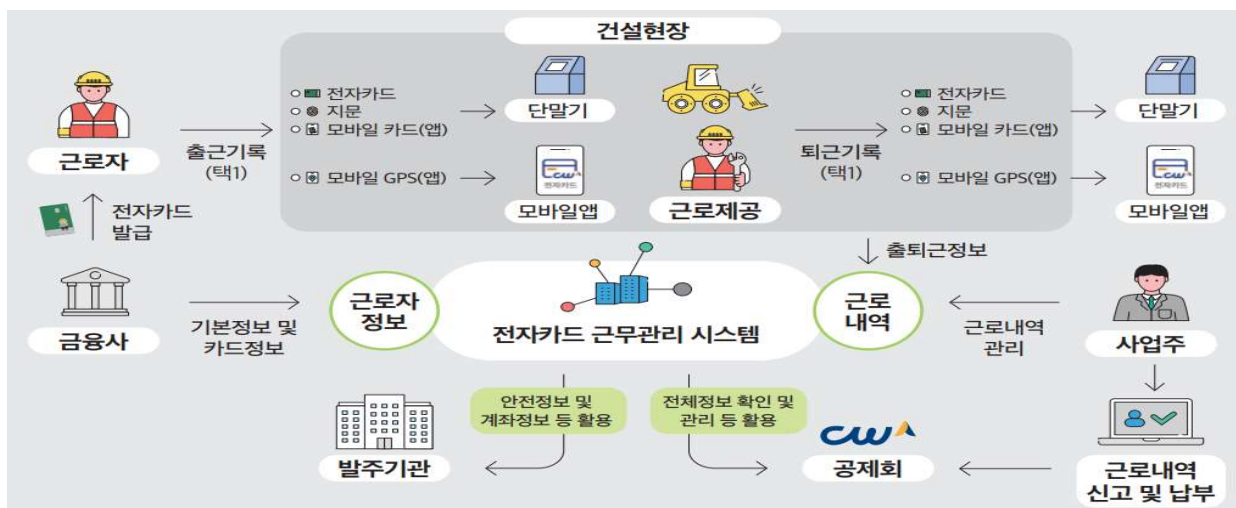
<참고> 전자카드제 주요 추진 경과

- ('15.10.)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개시(6개소)
- ('19.02.)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 전자카드제 적용(100억원 이상)
- ('21.03.)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시범사업 실시
- ('22.08.) 현대건설 전체 현장 대상 전자카드 도입 MOU 체결
- ('23.01.)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및 확산 추진계획」 확대(각 부처 및 지자체)
- ('23.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24.01.) 전자카드제 3단계 전면 확대(공공1억, 민간 50억 이상)

- (운영체계)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현장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여 기록을 남기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내역을 퇴직공제 신고 등에 활용

※ 근로내역 신고 등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을 통해 진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체계】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업무처리 절차

- (착공 및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성립신고 진행
※ 성립신고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 (단말기 설치)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 단말기 설치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말기 설치 예외 신청” 진행

<참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설치 예외 인정 기준

- (단말기 설치·운영)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퇴직공제 부금비)’에서 정산 가능
- (단말기 설치예외 인정 기준)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②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일용·임시근로자) 미투입 현장
**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기반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형태로,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거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안내
* 전국 하나은행 및 우체국
- (근로일수 확인 및 근로내역 신고) 전자카드를 통해 기록된 근로내역을 실제 출역공수와 비교하여 확인 후 신고
- (준공 및 정산) 공사 준공 후 퇴직공제부금 및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발주기관과 정산

【주요 업무 처리 절차도】

